회계처리세칙

제 정 2007. 1. 1 개 정(1) 2008. 1. 16 개 정(2) 2010. 7. 2 개 정(3) 2018. 3. 30 개 정(4) 2020. 9. 29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공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회 계처리에 관한 주요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①회계처리는 관계법령이나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- ②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.
- 제3조(회계연도)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4조(회계의 구분) 공사의 회계는 한국투자공사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3조에 의거하여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한다.
- 제5조(회계단위) ①회계단위는 총계정원장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로 한다.
 - ②제1항에서 규정한 회계단위 이외의 부속회계는 직제에 따라 소속된 회계단위에서 과장한다.
 - ③회계단위간의 거래는 본지사 계정을 두어 처리한다.
- 제6조(회계담당) ①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을 둔다.
 - 1.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
 - 2.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

- 3.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 또는 계약,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
- 4.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담당
- 5. 현금지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전도금 취급담당
- ②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 또는 동항 제2호와 제3호의 회계담당은 겸직할 수 없다. 다만,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7조(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) ①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는 공사가 부담한다.
 - ②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.
 - ③제1항의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는 제6조에 명시된 회계담당자를 말한다.
- 제8조(계정과목의 제정·개폐) ①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대차대조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구분한다.
 - ②계정과목의 신설·폐지 및 배열 등은 직제규정에 의한 회계주무부서의 장이 정한다.
 - ③계정과목의 명료성·계속성·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한다.
- 제9조(회계업무의 인계인수) 회계업무의 인수인계는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인계 자 및 인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제10조(회계서류의 보관 등) 회계서류의 보관·열람·보존·편철·대출 및 복사에 관하 여는 「기록물관리세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11조(회계장부 및 전표의 관리) 회계장부 및 전표는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2조(하부위임) 기타 이 세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관부문장이 정한다.

제2장 공사회계

제13조(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) ①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·손익계산서·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(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)·현금흐름표·자본변동표로 구성되며, 주석을

포함한다.

- ②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그 밖에 필요한 명세서는 부속명세서로 작성하여 재무제표에 첨부하여야 한다.
- ④주석사항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.
- 제14조(자산의 구분) 자산은 현금및예치금, 유가증권, 대출채권, 유형자산, 기타자 산으로 구분하다.
- 제15조(현금및예치금) 현금및예치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, 예치금 등으로 한다.
- 제16조(기타자산) 기타자산은 현금및예치금, 유가증권, 대출채권, 유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미수수익, 투자자산, 무형자산, 이연법인세자산 등으로 한다.
- 제17조(부채의 구분) 부채는 예수부채, 차입부채, 기타부채로 분류한다.
- 제18조(자본) 자본은 자본금·자본잉여금·이익잉여금,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 액 등으로 분류한다.
- 제19조(수익의 인식기준) 수익의 인식기준은 다음과 같다.
 - ①수수료수익과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.
 - ②기타의 수익은 수익의 실현시점에 인식한다.
- 제20조(영업수익) 영업수익은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운용 보수, 수수료수익,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이익, 외환거래이익, 수익증권이익분배 금, 이자수익, 배당금수익, 기타 영업수익 등으로 분류한다.
- 제21조(영업비용) 영업비용은 공사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써 수수료비용, 유가증권 평가 및 처분손실, 외환거래손실, 판매비와관리비, 기타 영업비용 등으로 분류한다.

제3장 결산

- 제22조(결산) ①결산은 회계기간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.
 - ②결산은 회계단위별로 매회계연도말에 실시하며, 반기말에는 결산에 준하여 가결산을 실시하다.
- 제23조(결산총괄책임자) ①결산총괄책임자는 회계담당부서장으로 한다.
 - ②결산은 각 계정별·회계단위별로 실시하고 결산총괄책임자가 이를 종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다.
- 제24조(결산지침) ①결산총괄책임자는 결산일 15일전까지 결산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시달한다.
 - ②제1항의 결산지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「회계업무처리지침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25조(불확정 채권·채무의 정리) 불확정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, 불확정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.
- 제26조(결산보고) ①사장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결산보고서는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현금흐름표,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, 자본변동표로 한다. 이 경우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4장 해외사무소의 회계

- 제27조(적용범위) 해외사무소, 주재원(이하 "해외사무소"라 한다)의 회계사무는 본장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28조(보고) 해외사무소는 보고 등의 지연으로 본사의 결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결산관련 자료를 거래 또는 장부의 마감이 끝나는 대로 회계담당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9조(증빙서류, 장표의 보관 및 보존) 해외사무소의 장표 및 증빙서류는 당해 해외사무소에서 보존·관리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본사에서 사본을 비치할 수 있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세칙의 시행 이전에 행한 회계사무는 이 세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3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4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